

제2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 진행방법(안)

□ 시정질문 진행방법

구 분	요 목	내 용	비 고
본질문	질문요지서 제 출	○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1일전까지	
	질문자결정	○ 질문 요지서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한 모든 의원 ※ 제출하지 않은 의원 제외	회의규칙 제33조의2 제2항
	질문의범위	○ 시정질문은 가능하면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함.	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
	질문(요목)건수	○ 의원당 3건이내로 제한	규정 없음
	질문순서 결 정	○ 질문순서 결정은 접수 순서대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장 협의결정	규정 없음
	질문시나리오 제출기한	○ 시정질문일의 5일전까지 제출 단, 답변서는 질문일 48시간전까지 제출	집행부와 협의 의 시행
	중복질문자 조 정	○ 해당 소관위원회 관련업무 질문자를 우선권 부여 ○ 같은 위원회에서는 질문요지 접수 순으로 우선권 부여	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
	질문 방법	○ 당일 일괄질문·일괄답변 실시	규정 없음
	질문 시간	○ 1 의원당 20분 이내	회의규칙 제33조 제1항

구 분	요 목	내 용	비 고
보충질문	질문자 결 정	○ 본질문 의원에 한함.	규정없음
	질문·답변 방 법	○ 일괄 질문 후 정회시간 부여 후 일괄 답변	규정없음
	발언 횟수	○ 의원당 1회로 한함. 단,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발언 할애	회의규칙 제32조
	질문(발언) 시 간	○ 의원당 1회 10분으로 제한. 단, 의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발언허가 할애	회의규칙 제33조 제1항
추가 보충질문	질문자 결 정	○ 본질문 의원에 한함.	규정없음
	질문·답변 방 법	○ 의석에서 일문일답	규정없음
	발언 횟수	○ 1의원당 1회로 한함. 단,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발언 할애	회의규칙 제32조
	질문(발언) 시 간	○ 1의원당 1회 10분으로 제한. 단,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질문 시간 할애	회의규칙 제33조 제1항